

제 호

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명 칭

수량(건설·제작·형성연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 근현대문화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국가유산청장 직인

소유자	주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기록자
(변경사항)				
소유자	주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경 연월일	기록자

유의사항

1쪽 왼쪽 상단의 '제 호' 에는 해당 연도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표기예시: 제2024-001호)